

# 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

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##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원고에게 20○○. ○. ○.자로 부과한 20○○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 ○○위 중 ○○○위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의 지위
  - 원고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에 거주하는 자로서 ☆☆건설에서 분양한 ○○ 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아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납세의무자입니다.
- 2.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게 20○○년도 6월 정기분으로 재산세 금○○○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.
- 3. 부과처분 내역

이 사건 아파트 〇〇평형에 해당되는 재산세의 부과내역을 검토하여 보다 음과 같습니다.



#### 가. m²기준단가 산출내역

m²기준단가는 기준지가 × 구조지수 × 용도지수 × 위치지수 × 잔가율로 하여, 동아파트 ○○평형m² 가액은 160,000원(기준가액)×1(구조지수)× 1(용 도지수) × 0.96(위치지수) × 0.987(잔가율) = 151,000원으로 산출하였습니 다.

#### 나. 과표산출내역

- ①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과세표준
  ○○○m²(전용면적) × 151,000원(m²당 기준가액) × 1.4(가감산율) = ○
  ○○원
- ② 공유면적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○○○m² ×151,000원 ×1.0(가감산율) = ○○○원
- ③ 지하대피소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○○○m² × 151,000원 × 0.8 = ○○○원
- ④ 지하차고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○○○m² × 151,000원 × 0.5 = ○○○원
- ① + ② + ③ + ④를 하면 합계 금 ○○○원이 됩니다.
- 다. 재산세부과액(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2호(1)의 규정 참조)
  - ① 전용면적 과세표준액(상기 ①부분)에 ○○○ × 0.07 1,944,000원 = ○○○원의 재산세액과
  - ② 공유면적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액(상기 ②+③+④부분)인 ○○○×0.003 = ○○○원의 재산세액이 각 산출되는 바.
  - 위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세액 ○○○원과 공용면적에 해당되는 세액 ○○○원을 합하여 동 ○○평형 아파트 재산세로는 금○○○원(10원 미만은 버림)을 부과하였습니다.

#### 4.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

- 가.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은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나.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
- 다. 위 재산세 산출근거가 되는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표 의 내용상 시가표준액의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1㎡당 기준가격 160,000원에 구조별, 용도별, 위치별 지수(이 3가 지의 지수를 적용지수라 함)와 경과년수별 잔기율을 곱하여 1㎡당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. 위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 산출시 1m²당 기준가격 160,000에 구조별, 용도별,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㎡ 당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1㎡당 건물의 시가표준 액을 위하여 적용된 특수지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산출된 1㎡당 건물의 시 가 표준액에 다시 적용하고 있는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 다 할 것입니다. 그중에서 ①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중 자동 승강 기와 7.560㎢이상의 에어컨(중앙소정식에 한함) 및 빌딩 자동화 시설에 대 한 가산율 적용과 특수건물에 대한 가산을 적용, 호화 내ㆍ외장재 사용 건 물에 대한 단순한 가산율 적용은 건물 특수성에 따라 이미 가감하고 있는 데도 또 다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순지수가 아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른 누진가산율 적용은 이중 누진율 가산적용으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.
- 라.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은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 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지방세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표 등을 검토하더라도 이와 같은 대원칙을 반영한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서울과 기타 지방간의 실제 재산가격을 무시한 채(이것은 지역지수를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만 서울과 타지방간 재산가액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음) 보유재산의 평수위주로 재산세과표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

는 재산세의 세액과 지방에 있는 재산의 재산세와 비교하면 서울에 이 제산은 지방에 있는 재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고,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반 상가건물과는 달리 유독 주택건물에 대하서만 이중으로 누진적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량권 일탈 남용했다 할 것입니다.

마. 이처럼 조세의 종목은 지방세법 제110조에 규정하고 있고, 세율은 지방세법 상 각 과세표준에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시금 원고들에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른 누진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규정에 나타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 규정에 나타난 누진율 적용외에 또 다시 자의적으로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어느 모로 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.

#### 5. 결 론

결국 피고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적용된 1㎡ 당 주택에 규모별로 누진 가산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2호 건축물중(1)주택부문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각 과세표준에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또 다시 이중으로 누진적 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, 이는 신의, 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한 세금부과를 하되 공평, 실질 과세를 하여야 할 피고가 단지 세수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취소받고자 이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#### 6. 전심절차

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경료하여 2000. O. O.자 심사청구결정통지서를 같은 해 O. O.경 수령하였습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내지 32

납세고지서

1. 갑제 2호증

이의신청결정통지서

## 심사청구결정통지서



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부

1. 소장부본 1부

1. 납부서 1부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| 관할법원          | ※ 아래(1)참조   | 제소기간 | ※ 아래(2) 참조 T    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청 구 인         | 피처분자  | 피청구인 |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     |
| 제출부수          |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<br>큼의 부본 제출  | 관련법규 | 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 |
| 비용            | 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<br>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
| 불복방법<br>및 기 간 | 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<br>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<br>396조) |      |                  |

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